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9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이정문・이기헌・박홍배

전현희 · 윤건영 · 이학영

민형배 · 김남근 · 이연희

김원이 • 한민수 • 채현일

어기구 • 문진석 • 이인영

차지호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24조제3항·제4항).
-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제4항).

법률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는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

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마련한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은 이 법에 따른 내부통 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으로 본다. 다만,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생	제24조 <u>(내부통제기준 등)</u>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	<u><</u> 삭 제>
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	
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
	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
	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
	약 부분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생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	<u><삭 제></u>

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 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 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рс
6) ①	
<u>두어야 하며, 위험</u>	범관리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	<u> </u>
경우 위험관리 결과를 감시	<u> </u>
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
<u>다</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 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

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 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 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 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 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 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

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 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

 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

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별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하게 할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별표 각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요구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 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 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 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 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